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3.7.10. 시행)됨에 따라 제정법령에 근거한 하위지침 개정 및 지침사용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침 전반을 정비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운영지침 내 폐지법령 인용 문구를 수정(안 제1-1-1부터 제7-1-1)
- 나.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에 관한 절차를 본문 상 삭제하고 별표 서식으로 규정(안 제 3-1-1)
- 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관한 조문을 알기쉽게 ‘절 단위’로 재배치(안 제3-2-1부터 제3-5-3)
- 라. 원활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6-4-1부터 제6-4-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의 제목 “지침의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제19조제9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제9항”으로 한다.

제1-1-2를 삭제한다.

제1-2-1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법 제31조”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18호”로 하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2 중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법 제2조제3호”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 협약’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7호”로, “초광역협력사업”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하고, “시행령 제14조의3”을 “영 제41조”로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한다.

제1-2-3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한다.

제1-3-1 중 “협약 당사자는 투자협약”을 “협약 체결 당사자는 협약”으로 한다.

제1-3-2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지역이”를 “지자체가 지역”으로 한다.

제1-3-3 중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사자 상호 간의”로 한다.

제1-3-4 중 “사업”을 “사업(이하 ‘협약대상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협약의 대상”을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대상”을 “협약 대상”으로 한다.

제2-1-1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법 제20조”를 “법 제31조”로 한다.

제2-1-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을 “영 제42조제8항”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하며, (1) 중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하고, (2) 중 “상승효과”를 “지역의 상승효과”로 하며, (3) 중 “사업 성과”를 “사업성과”로 한다.

제2-1-3 중 “상승효과”를 “상호 상승효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제외대상”을 “협약 제외대상”으로 한다.

제2-2-1 중 “대상사업”을 “협약대상사업”으로, (1) 중 “법 제41조”를 “법 제 87조”로 하고, “영 별표2”를 “영 별표3”로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2) 중 “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며, “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4) 중 “주민”을 “지역주민”으로 하며, (5)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를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

제3-1-1부터 제3-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1-1. 협약의 체결 절차는 별표1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초광역권 협약의 경우에는 별표2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3-1-2. (삭제)

제3장제2절의 제목 “협약안 작성 및 제출”을 “협약안 작성”으로 한다.

제3-2-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2-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이라 한다) 작성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하며, 단독 또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2-2 중 “사업계획”을 “협약대상사업의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3-2-5를 제3-2-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2-3. 지자체 장은 ‘3-2-2’에 따라 협약안을 작성할 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목적

(2) 협약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 (3) 국가의 책무
- (4) 지자체의 책무
- (5) 협약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 (6) 협약의 효력
- (7) 기타

제3-2-3을 제3-2-4로 하고, “협약을 함께”를 “공동으로 협약을”로 하며, “작성한다”를 “추가로 작성한다”로 한다.

제3-2-4를 제3-2-5로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관리 주체는 ‘3-3-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균형위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3-2-6을 다음과 같이 “지자체 장은 ‘3-2-5’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성과관리 주체는 ‘3-4-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신설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체결안 마련 및 협약 체결”을 “협약안 제출”로 한다.

제3-3-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3-1. 지자체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협약안 본문
- (2) 부속서류

- ①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 ② 공동추진 협약서(‘3-2-4’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 ④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 ⑤ 기타 필요서류

제3-2-6을 제3-3-2로 하고, “기초지자체”를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말한다)”로 하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하고,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3-2-7을 제3-3-3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을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하며,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으로 하고, (1) 중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하며, (2) 중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3) 중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을 “초광역협력사업”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2-8을 제3-3-4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협약안 검토의견 작성

제3-3-1을 제3-4-1로 하고, “협약안에”를 “14일 이내에 협약안에”로 하며,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2) 중 “14일 이내에 균형위에 의견을 제출해야”를 “의견을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3-3-2를 제3-4-2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로 하며, “검토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하며, “체결안의”를 “체결안”으로 한다.

제3-3-4를 제3-4-3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3-3을 제3-4-4로 하고,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초광역권 협약”으로 하며,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로 하고,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의견”으로 하며,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를 “지방시대위원회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로 하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을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으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체결안 작성 및 협약 체결

제3-3-5를 제3-5-1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3-6을 제3-5-2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3-3-7을 제3-5-3으로 하고, “3-3-5”를 “3-5-1”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협약의 이행”을 “협약 이행”으로 한다.

제4-1-1 중 “사업”을 “협약사업”으로, (1)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2)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3)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4) 중 “법 제44조”를 “법 제90조”로 한다.

제4-2-1 중 “보고’에 따라”를 “보고’를 작성하여”로, “추진 실적”을 “추진실적”으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2-2 중 “추진 실적”을 “협약사업의 추진실적”으로, “‘5-1-1’에서 ‘5-1-3’의 규정에”를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를”로 한다.

제4-2-3 중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한다.

제4-2-4 중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추진 실적”을 “추진실적”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을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을 “협약 변경”으로 한다.

제5-1-1 중 “협약의”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의”로,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협약안의”를 “이 경우 협약안의”로 하며, “‘3-1-1’ 및 ‘3-1-2’의”를 “‘3-1-1’에 따른”으로 하고, (1)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협약사업”으로 하며, (3) 중 “협약 당사자”를 “협약

체결 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으로 하고, “균형위에”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협약 변경을”로 한다.

제5-1-2 중 “5-1-1”을 “5-1-1’에 따른 중대한 변경 사유”로, “협약체결 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1-3 중 “협약 내용의”를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의”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으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지역발전투자협약 해약”을 “협약 해약”으로 한다.

제5-2-1 중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2-2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협약에 대한 지원”을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을 “협약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2-1을 제6-1-1로 한다.

제6-2-2를 제6-1-2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6-2-3을 제6-1-3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으로 하며,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을 “법 제69조

제1항 및 영 제69조제5항”으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으로 하며, (5) 중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6장제2절의 제목 “협약에 대한 지원”을 “초광역권 협약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6-2-4를 제6-2-1로 하고, “균형위”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마련을”을 “초광역권 협약안 작성을”로 한다.

제6-2-5를 제6-2-2로 하고,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초광역권 협약”으로 하며, (1) 중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법 제79조제2항제1호”로 하고, (2)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8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6을 제6-2-3으로 하고,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초광역권 협약”으로 하며, “법 제6조의2”를 “법 제9조”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

제6-1-1을 제6-3-1로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협약”으로 하며, “법 제39조”를 “법 제85조”로 한다.

제6-1-2를 제6-3-2로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하며,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31조제2항”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6-1-3을 제6-3-3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주관부처, 관계부

처 및 지자체”로 한다.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민간협력

제6-4-1부터 제6-4-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1. 지자체는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4-2. 지자체는 ‘3-3-1’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할 때에 지자체와 민간부문 간 협력사항(이하 ‘민간협력사항’이라 한다)을 보조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6-4-3. 지자체가 ‘6-4-1’에 따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협약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책무를 정하고, 원활한 협약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협력사항이 협약과 상충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가 우선한다.

6-4-4. 지자체는 민간협력사항에 대하여 행정·제정적 지원을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제 7-1-1 중 “7-1-1”을 “7-1-1.”으로,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3-1-1 관련)

협약안 작성 (지자체 장)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협약안 심의·의결 * 시·도는 시·군·구 의견 수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 협약안 제출 (지자체 장 → 지방시대위원회)	
↓ 협약안 송부 (지방시대위원회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즉시 송부
↓ 협약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 필요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지방시대위원회)	14일 이내
↓ 종합 검토의견 작성 및 체결안 작성 요청 (지방시대위원회 및 간사부처 → 주관부처)	14일 이내
↓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 작성 및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의견 수렴 (주관부처 → 지방시대위원회)	14일 이내
↓ 지방시대위원회 체결안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 체결안 송부 (주관부처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즉시 송부
↓ 협약 체결 (주관부처, 관계부처-지자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3-1-1 관련)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 장)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지자체 장)	생략 가능 (법 제9조)
↓	
협약안 작성 (지자체 장)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협약안 심의·의결 * 시·도는 시·군·구 의견 수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	
협약안 제출 (지자체 장 → 지방시대위원회)	
↓	
협약안 송부 (지방시대위원회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즉시 송부
↓	
협약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 필요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 지방시대위원회)	14일 이내
↓	
종합 검토의견 작성 및 체결안 작성 요청 (지방시대위원회 및 간사부처 → 주관부처)	14일 이내
↓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 작성 및 제출 * 시·도는 시·군·구 의견 수렴 (주관부처 → 지방시대위원회)	14일 이내
↓	
지방시대위원회 체결안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	
체결안 송부 (주관부처 →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	즉시 송부
↓	
협약 체결 (주관부처, 관계부처-지자체)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제 2024-0호

"○○○○○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되는 "○○○○○ 사업"에 대하여 ○○○도, ○○○도 ○○○군과 정부(○○○부, ○○○부, ○○○부, ○○○부)는 향후 3년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하에 작성한 협약 조건과 부속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한다.

1. ○○○도, ○○○도 ○○○군이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 ○○○부, ○○○부, ○○○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정부와 ○○○도, ○○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을 확보한다.
3. 정부는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도와 ○○군은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4.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년 0월 0일

(서명)

○○○부

(서명)

○○○도

(서명)

○○군

(서명)

○○○부

(서명)

○○○부

(서명)

○○○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조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로 추진되는 "○○○○○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각 분야별 소관 행정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협약기간 동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성,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협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협약 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협약 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부속서와 같다.

제3조(협약 대상사업의 소관) 협약 대상사업의 주관부처는 ○○○부로 하고, 관계부처는 ○○○부, ○○○부, ○○○부로 한다. 다만, ○○○도와 ○○○도 ○○○군은 협약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관부처 또는 관계부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조언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자체의 책무) ○○○도지사 및 ○○○군수는 부속서에 포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 사업 추진 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지자체 및 사업 참여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부속서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정부,

○○○도지사, ○○군수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7조(성과관리계획) 정부, ○○○도지사, ○○군수는 부속서에 규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협의회) ① ○○○도 ○○군은 협약 대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 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부, ○○○도, ○○군,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③ 협의회는 협약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 성과관리계획 평가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군수로 하며, ○○군수는 정부, ○○○도와 상호 합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9조(추진단) ① 협의회의 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정부, ○○○도, ○○군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 단장은 ○○군의 사무관급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약 대상사업의 세부계획(변경 포함) 수립 지원
2. 협약 대상사업의 성과관리계획 평가 및 관리 지원
3. 그 밖에 추진단 업무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10조(사업진행에 대한 점검계획) 정부와 ○○○도지사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외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료일까지 협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의 부속서에 따른 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평가등을 위한 기간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③ 본 협약의 부속서에 따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부진(60% 미만)한 경우, 주관부처의 장의 제청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약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

주관 지자체명		시도명	
사업명			

* 사업 선정기준의 취지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준별 부합 정도를 ‘부합 · 보통 · 미흡’란에 ‘√’ 표시하고, 사업 개선사항 관련 자유의견을 기재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주요내용	의견		
			부합	보통	미흡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 패키지화의 적절성	- 기존사업 혹은 신규사업들간 조화·융·복합 계획의 적절성			
		- 기존 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여부			
		- 사업 패키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부합성	-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정과제, 비전과 전략 등 균형발전정책 반영 여부			
		- 해당 지자체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정책 등과의 부합성 여부			
	사업내용 현실성·구체성	-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및 구체성			
		- 재원조달 방안의 현실성 및 연도별 투자계획 적절성			
	지역여건 고려 및 지역자원 활용 정도	-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여건분석 타당성			
		- 지역 내 자원의 적절한 활용 여부 및 주변 유관사업 운영현황 분석			
사업 추진체계 적절성	추진체계 적합성	- 여러 부처 사업들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 계획의 적합성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자문그룹 구성 및 운영계획			
		- 전문 사업관리자 등 지정 및 운영계획			
	주민·전문가 참여 여부 사전절차 이행 및 잠재적 갈등해소방안 등	- 의견수렴 전담체계 구축여부			
		- 주민·전문가 의견, 참여실적 및 계획			
		- 부지확보 정도, 토지이용규제 저촉 여부, 각종 영향평가 절차 이행여부 - 인근주민의 사업동의 여부 등 예상 갈등, 법적쟁점, 문제점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여부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일자리 창출 등 직·간접적인 기대효과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경제여건 개선 등 기대효과 분석 및 적절성			
	성과관리, 사업 유지·관리계획 적절성	- 성과관리 목표(지표) 제시여부 및 적절성			
		- 사업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성 (관리주체, 관리비용, 운영방안 적절성)			

< 자유의견 >

(사업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더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기재)

(예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내용을 대폭 보완할 필요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제2024-0호

"○○○○○ 사업"에 대한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되는 "○○○○○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도, ○○○광역시)와 정부(○○○부, ○○○부, ○○○부, ○○○부)는 향후 00년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및 부속서에 근거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 (협약 대상사업의 소관) 협약 대상사업의 주관부처는 ○○○부로 하고, 관계부처는 ○○○부, ○○○부, ○○○부로 한다. 다만, 지자체는 협약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관부처 또는 관계부처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2조 (국가의 책무) 정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우선 지원

2.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4.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 필요시 사업 특성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예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지원, 공모우대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지자체의 책무) 지자체장은 부속서에 포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매년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

2. 사업 추진 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

3. 지자체 및 사업 참여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 등에 필요한 조치

제4조 (성과관리계획) 정부, 지자체장은 부속서에 규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성과지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00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상황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상호 협력) 사업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 년 0월 0일

(서명)

○○○○도

(서명)

○○○○부

(서명)

○○○○광역시

(서명)

○○○○부

(서명)

○○○○부

(서명)

○○○○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서(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

협약 지자체명		시도명	
사업명			

* 사업 선정기준의 취지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준별 부합 정도를 ‘부합 · 보통 · 미흡’란에 ‘√’ 표시하고, 사업 개선사항 관련 자유의견을 기재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가 주요내용	의견		
			부합	보통	미흡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 패키지화의 적절성	- 기존사업 혹은 신규사업들간 조화·융·복합 계획의 적절성			
		- 기존 지원사업의 효율적 활용여부			
		- 사업 패키지화에 따른 시너지효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부합성	-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정과제, 비전과 전략 등 균형발전정책 반영 여부			
		- 해당 지자체의 특성화된 지역발전 정책 등과의 부합성 여부			
	사업내용 현실성	- 사업계획 내용의 현실성			
		- 재원조달 방안의 현실성			
	지역여건 고려 및 지역자원 활용 정도	-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여부 및 여건분석 타당성			
		- 지역 내 자원의 적절한 활용 여부 및 주변 유관사업 현황 분석			
사업 추진전략 적절성	추진전략 적합성	- 여러 부처 사업들을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 계획의 적합성			
		- 자문그룹 구성 및 운영계획			
	의견수렴 적절성	- 의견수렴 체계 구축여부			
		- 주민·전문가 의견, 참여실적 및 계획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	일자리 창출 등 직·간접적인 기대효과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경제여건 개선 등 기대효과 분석 및 적절성			
	성과관리계획 적절성	- 성과관리 목표(지표) 제시여부 및 적절성			

< 자유의견 >

(사업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좀더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기재)

(예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 내용을 대폭 보완할 필요